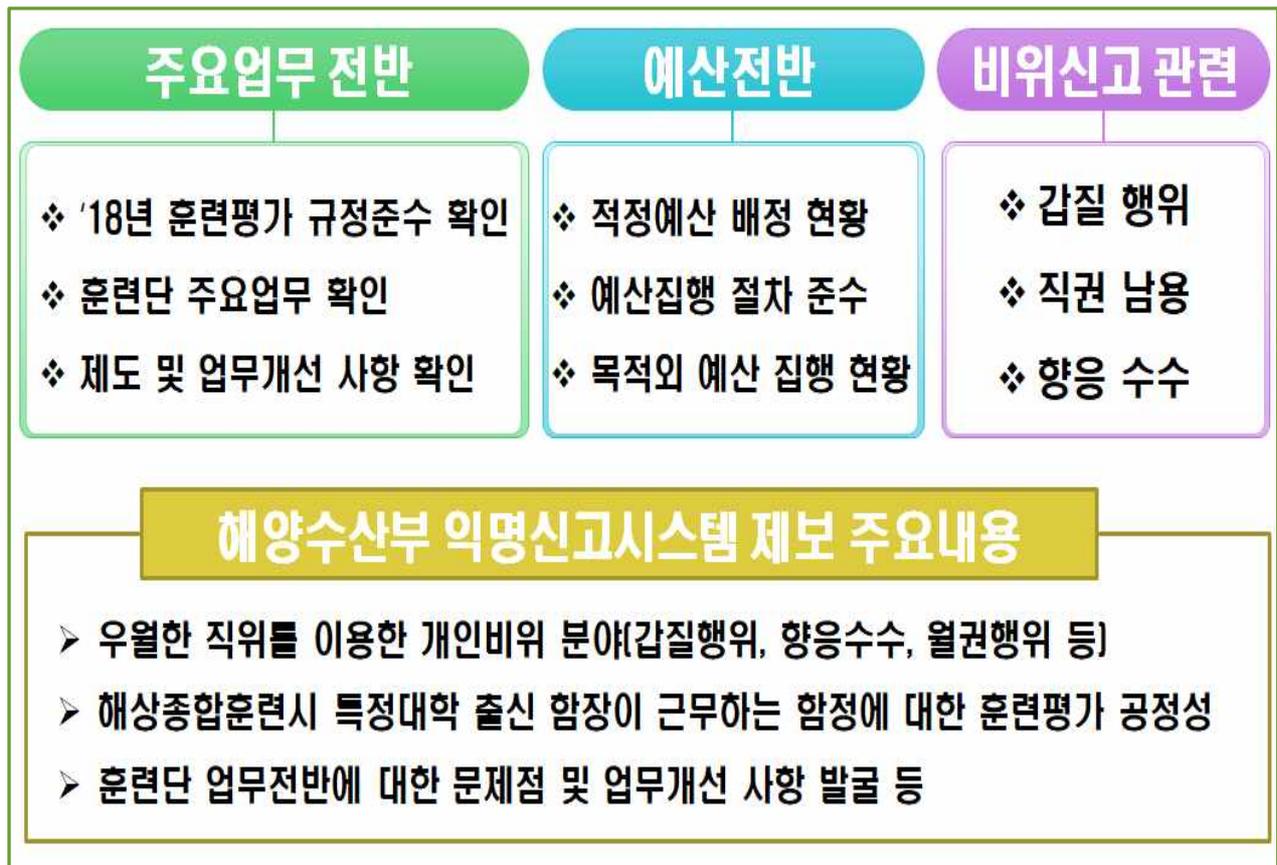


중부지방해양경찰청 「특별감사」 결과 보고

I 감사 개요

- (기간) '19. 4. 8.(월) ~ 4. 15.(월) / 6일간
- (대상)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
- (감사범위) '18. 1월 ~ '19. 4월 주요업무 전반 등
- (감사단) 감사담당관 등 5명(상주 4명)

II 감사 중점 분야



Ⅲ

업무 개선 및 지적사항

번호	부서명	제 목	처분결과
1. 업무개선			
1-1	해양경찰교육원 (종합훈련지원단)	<p>□ 훈련 평가방법 개선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훈련교수의 주관적 판단이 훈련평가에 결정적 영향 ※ 훈련결과의 '공정성'에 대한 불신 <p>☞ 해상사격 참관인 제도, 채증 강화, 평가 공개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</p>	개선
1-2	해양경찰교육원 (종합훈련지원단)	<p>□ 훈련단 급량비 지원체계 개선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함정승선 훈련 중 중식 제공시 항응수수 논란의 우려 <p>☞ 불가피하게 급식 제공받는 경우 출장여비 지급 시 중복 처리 되지 않도록 급량비 지원체계 개선 필요</p>	권고
1-3	중부지방해양경찰청	<p>□ 훈련단장 직급상향 필요(경감→경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평가대상 함정장(경정~경위) 대비 평가자(경감)의 낮은 직급 <p>☞ 함정훈련의 컨트롤 타워로서 훈련단의 역량 및 훈련 실효성 강화 위해 지방청 훈련단장 직급상향 필요</p>	개선
2. 지적사항			
2-1	해양경찰교육원 (종합훈련지원단)	<p>□ '18년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평가비율 변경 불합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류절감 시행지침*에 따른 평가기준(비율) 적용 부적정 ※ 하반기 해상사격 평가 비율 변경(7%→0%) <p>☞ 지침 시행일 기준 既 해상사격 실시한 함정 대비 사격훈련 안한 함정 점수가 더 높아진 결과 초래</p>	통보
2-2	중부지방해양경찰청	<p>□ 훈련단 교수요원 선발기준 미준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훈련교수는 경위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선발토록 규정 ※ 중부청 훈련단 교수요원 총 6명 중 4명이 선발기준 미흡 <p>☞ 「해양경찰 함정훈련 규칙」 14조(훈련 교수)에 따른 훈련단 교수요원 선발토록 통보</p>	통보
2-3	중부지방해양경찰청	<p>□ 우월한 지위 이용 모욕적 발언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익명 신고 中 '편파적 평가, '항응 수수' 부분 확인되지 않음 ■ 관용차량 독점 사용, 동료 교수자질 폄하 발언 확인 <p>☞ 관련자에 대한 경고 처분</p>	경고